

「경비업법」제·개정예 따른 민간경비의 시대적 구분



박수현 · 김병태 · 최동재



「경비업법」 제·개정에 따른 민간경비의 시대적 구분

박수현* · 김병태** · 최동재***

<요 약>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6년에 만들어진 「경비업법」은 법의 제정 이후 「경비업법」이 26차례의 제·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비업법」의 제·개정을 통한 민간 경비의 시대적 구분은 크게 3가지 시기로 나뉘볼 수 있다. 첫 번째 정착기이다. 1976년~2001년까지 지금의 5가지 업무영역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1976년에 시설경비와 호송경비를 시작으로 1996년 신변보호, 2001년에 기계경비와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면서 지금의 5가지 업무형태로 갖추게 되었다. 두 번째 성장기(양적)이다. 2002년~2013년까지 제도적인 기반 위에 양적인 발전을 이루는 시기이다. 국민의 안전의식 증가로 안전서비스의 수요를 바탕으로 각종 문화·체육·예술 행사가 증가하면서 양적인 발전이 일어났고, 더불어 개정을 통한 자본금 하향과 겸업의 기능이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성장기(질적)이다. 2013년~현재까지 양적인 성장이 둔해지고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기이다. 양적인 성장기 이후에 성장세는 둔화하였지만,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자본금의 상향으로 경비업 허가기준을 높이고, 각종 처벌규정의 제도적인 보완, 경비원 신입교육시간의 현실화와 개인 교육 허용 등으로 경비원 직업의 신뢰와 전문성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주제어 : 경비업, 경비업법, 제·개정, 민간경비, 시대적 구분

* 대구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과 교수 (제1저자)

** 경운대학교 항공보안경호학부 교수 (교신저자)

*** 경운대학교 항공보안경호학부 교수 (공동저자)

목 차

- | |
|---|
|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경비업법」 제·개정 주요 내용
IV. 「경비업법」 제·개정에 따른 민간경비 시대적 구분
V. 결 론 |
|---|

I. 서 론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급격한 사회적·제도적 변화를 겪어 오면서 경제는 놀랄 만큼 급성장하였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산업화가 급속히 확산되었고 산업화로 인한 사회의 복잡화 도시 과밀화는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켜 경제성장을 가져왔다. 경제성장은 대한민국의 풍요로움을 선물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를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로 진입하게 하였다(최석오, 2011).

풍요롭고 평안한 사회의 이면에는 범죄의 양적 증대와 그 유형의 다양화, 조직화 등의 이유로 사회 구성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리고 기타 각 조 위해요소로부터의 안전욕구는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신형석, 이기세, 2013). 하지만 기본적인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하는 경찰의 현실적 능력과 인력은 모든 국민들의 치안을 보장해주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를 보조하거나 같이하기 위해 민간경비제도는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비업법」의 목적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6년도에 만들어졌다. 법의 제정 이후에 「경비업법」이 26차례, 「경비업법 시행령」이 31차례, 「경비업법 시행규칙」이 26차례 제·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경비원의 권한과 업무 영역, 자격증제도, 불법행위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개선하

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그리고 「경비업법」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연구가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서직석, 박세창(2018)과 최석오(2012)의 연구처럼 지위나 책임, 직무범위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도 있었지만 박병식(2011), 이상훈(2013)의 연구에서처럼 거시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 하나는 비교에 의한 연구이다. 「이세환(2012), 김태민(2012) 등 법 자체를 비교하거나 경비지도사제도 등을 비교하였다. 또한 박수현·김태민(2013), 이민형·이상철·최용(2009)의 연구처럼 일본, 중국의 경비관련 제도·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세 번째. 개정안 또는 개정된 법의 평가이다. 이렇게 「경비업법」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개정 당시의 상황에 따라 평가와 과제를 제시하거나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한 연구로 대부분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는 역사와 시간에 따라 시대의 구분 없이 사건들의 집합으로만 존재했던 것들을 구분함으로써 시대마다 일반적인 특징들을 기술하고, 민간경비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민간경비

민간경비의 정의는 현재까지 많은 학자가 개념규정을 시도하였으나 민간경비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영역이 계속 변화하고,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경비업법」은 경비업, 즉 일반적으로 민간경비라고 부르는 업무에 대한 건전한 육성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의미를 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민간경비는 Private Security를 말하는 것으로 공경비의 반대되는 의미이다. 1995년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으로 민간경비론이 채택되기 전까지 사경비로 불리다가 이후 민간경비로 대다수가 부르고 있다(강민완, 함주일, 2010). 민간경비의 정의는 사적인 자치 영역에서 사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비작용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보호, 질서유지를 위해 일련의 모든 예방적 활동을 말한다(이민형, 2014).

민간경비는 범죄예방 및 감소 또는 질서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다. 즉 특정 의뢰인

으로부터 받은 대가 내지 보수만큼 그 의뢰인을 위해 범죄예방과 억제 또는 경제적 이익 및 손실방지를 위한 예방적 측면을 실시하고 있다(조민상, 조호대, 2017).

<표 1> 경비업체 현황

구분	법인수	허가 업종별 업체 수(개)					
		계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14년	4,287	5,040	4,184	40	538	139	139
15년	4,449	5,203	4,338	38	540	146	141
16년	4,570	5,337	4,456	42	548	146	145
17년	4,610	5,428	4,528	42	567	149	142

민간경비의 정확한 현황은 자체경비를 포함한 모든 민간경비산업의 합 이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취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경비업법에 의한 민간경비의 현황은 경찰청에서 정보공개로 제공하고 있는 경비업체 그리고 경비원의 현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경비업체는 1976년 법이 제정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기준으로 4,610개 있다. 업무별로 살펴보면 시설경비가 4,528개, 호송경비가 42개, 신변보호 567개, 기계경비 149개, 특수경비 142개로 나타났다. 경비원도 경비업체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2017년 기준으로 156,066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경비원 현황

연도	14년	15년	16년	17년
경비원 수	150,543	153,767	147,049	156,066

2. 「경비업법」

「경비업법」은 산업시설·공공시설·사무소 등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물의 경비업을 할 수 있도록 용역경비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경비업무의 실시에 적정을 기하려는 이유로 1970년대 중반의 한국사회의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만들어진 제도로서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46호로 제정·공포되었다. 법의 제정 이후로 현재까지 사회 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 그리고 논리와 경험

에 따른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경비업법」이 26차례, 「경비업법 시행령」이 31차례, 「경비업법 시행규칙」이 26차례 제·개정이 이루어졌다.

「경비업법」의 내용은 제1장(총칙)에서 목적, 정의, 법인에 대한 내용, 제2장(경비업 허가 등)에서 경비업의 허가, 제안 경비업자와 도급인의 의무에 대한 내용, 제3장(기계경비업무)에서 기계경비업무의 대응체계와 오경보의 방지에 대한 내용, 제4장(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에서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경비지도사의 시험, 선임, 경비원의 교육·의무·복장·장비, 출동차량, 범죄경력조회, 경비원 명부와 배치허가에 대한 내용, 제5장(행정처분)에서 경비업 허가의 취소,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청문에 대한 내용, 제6장(경비협회)에서 경비협회, 공제사업에 대한 내용, 제7장(보칙)에서 감독, 보안지도·점검, 손해배상, 위임 및 위탁, 수수료에 대한 내용, 제8장(벌칙)에서 벌칙, 형의 기중처벌, 양벌규정, 과태료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Ⅲ. 「경비업법」 제·개정 주요 내용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경비업법」은 1976년 제정된 이후에 이 법이 26회, 시행령 31회, 시행규칙 26회 개정되었다. 제정부터 2017.10.24. 일부개정에 이르기까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정이유 [법률 제2946호, 1976.12.31. 제정]

산업시설·공공시설사무소등 기타 경비를 요하는 시설물의 경비업을 할 수 있도록 용역경비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용역경비업무의 실시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경비업법」개정은 크게 일부개정, 타법개정, 전부개정으로 구분된다. 타법에 의한 개정의 경우「경비업법」이 아닌 법이 변경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행정안전부의 명칭이다. '내무부',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를 순서)¹⁾대로 거쳐보면서 지금의 행정안전부가 되면서 「경비업법」내의 내용이

1) 내무부, 행정자치부(법률 제5940호, 1999.3.3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행정자치부(법률 제2014.11.1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변경된 것이다. 이 외에도 「형법」의 일부개정(법률 제13719호, 2016.1.6. 타법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 제13718호, 2016.1.6. 타법개정),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이 ‘성년후견·한정후견’으로 변경(법률 제12911호, 2014.12.30. 일부개정), 「대통령경호실법」 일부개정으로 「대통령 경호실법」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 「행정절차법」이 개정되어 경비지도사와 경비업자의 행정처분에 의한 허가취소에 대한 청문 추가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타법의 개정으로 인한 것들은 「경비업법」의 목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요 개정에 대한 내용을 과거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이유 [법률 제3372호, 1981.2.14. 일부개정]

용역경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연령상한을 50세에서 55세로 연장하여 경비원의 사기를 양양하려는 것임.

고령인구의 경비업 유입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경비원의 연령상한을 50세에서 55세로 연장하였다.

개정이유 [법률 제3678호, 1983.12.30. 일부개정]

용역경비업자의 불필요한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벌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하거나 해임할 때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무허가영업행위의 벌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고 휴업신고의무위반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로 완화하였다.

개정이유 [법률 제4148호, 1989.12.27. 일부개정]

용역경비업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경비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경비원의 자격연령을 연장하며, 용역경비업자의 손해배상보장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경비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이 침해하는 것을 막고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후생복지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규정하였다. 또한 연령의 상한을 기존 55세에서 58세로 완화하였다. 이 밖에 경비협회가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이유 [법률 제5124호, 1995.12.30. 일부개정]

시설경비업을 용역경비업의 한 분야로 흡수하고,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지도·감독 및 교육을 전담하는 경비지도사제도를 신설하며, 용역경비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인에 대한 신체·생명·재산의 보호하고 위해발생을 방지하는 신변보호업무를 경비업의 한 분야로 추가하고 경찰청장이 가지고 있던 경비업의 허가권한을 경비업체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양하였다. 경비업체의 임직원과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교육을 전담하는 경비지도사제도를 신설하였다. 일반경비원 연령 상한이 없어졌다.

개정이유 [법률 제5940호, 1999.3.31. 일부개정]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자격증과 관련된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설립과 가입이 강제되던 용역경비협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용역경비업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를 개선·완화하려는 것임.

1976년 「용역경비업법」으로 제정된 법령이 지금의 「경비업법」으로 바뀌었다. 경비지도사 자격증 관련된 규정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 대표적으로 30세 이상 지원자격을 삭제하였다. 설립과 가입이 강제되었던 경비협회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였다.

개정이유 [법률 제6467호, 2001.4.7. 전부개정]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비업의 종류에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고, 기계경비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기계경비업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한편, 기계경비업자의 신속대응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전까지 신고제로 운영되던 기계경비업무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을 설명하도록 하고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국가중요시설을 담당하는 특수경비업무를 경비업의 종류로 신설하고 관련 무기사용, 복종의무·경비구역이탈금지 의무를 명시하였다, 경비업 허가의 실효성의 확보하기 위해서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였다.

개정이유 [법률 제6787호, 2002.12.18. 일부개정]

경비업자의 대부분이 경비업 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하고 있는 경비업계의 현실성에 맞추어 이 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비업자의 겸업금지의무를 특수경비업자로 한정함으로써 경비업자의 영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경비분야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경비업자 전체의 영업에 제한을 두고 있었던 것을 경비업자들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다. 경비업자 중에서 일반경비업자, 즉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자의 경우는 영업의 제한을 두지 않고, 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을 고용하는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개정이유 [법률 제7544호, 2005.5.31. 일부개정]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경비지도사 및 그 종류에 관한 사항과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경비지도사의 구분인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를 「경비업법」에 추가하였다.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개정이유 [법률 제7671호, 2005.8.4. 일부개정]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게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변보호 또는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경비원이나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때에는 24시간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시설경비업무와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을 24시간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였다.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자,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개정이유 [법률 제9192호, 2008.12.26. 일부개정]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과거에 「경비업법」에서 처벌을 영업주의 노력과 주의와 상관없이 영업주의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을 같이 처벌하였다. 하지만 법에서 정하는 양벌규정은 책임 없으면 형벌이 없다고 하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과 상이하기 때문에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이유 [법률 제9569호, 2009.4.1. 일부개정]

특수경비원이 국가 중요시설에 배치되며 유사시 무기를 휴대하는 자로서 무기의 적정 사용 및 피탈 방지 등을 위해 일정한 체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지만,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현실에서 특수경비원의 연령 상한을 58세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60세로 연장하려는 것임.

특수경비원 결격사유에서 연령이 18세 미만 또는 만 58세 이상 인자에서 한국인의 평균수명과 경비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60세 이상으로 연장하였다.

개정이유 [법률 제11872호, 2013.6.7. 일부개정]

1976년「경비업법」이 제정된 이후 경비업은 단순 시설 경비에서부터 공항·항만·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로 그 영역이 계속 확장되면서 현재 치안서비스의 상당부분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나, 최근 집단민원현장에서 발생한 노조원과 경비원 간의 무력충돌이나 무자격의 경비원 동원으로 인한 폭력사태 등으로 국민생활에 불안감을 주고 있어 경비업자 및 경비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바, 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경비업의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경비원의 폭력이 문제가 되는 노사분규·재개발 현장 등 집단민원현장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배치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도록 하며,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업무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경비업무 현장 중에서 노사분규, 재개발현장 등 집단민원현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경비업 허가의 자본금 최저 기준을 1억 원 이상으로 하여 기존의 5천만 원에서 높였다. 같이 동일명칭의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100년, 취소도니 범인은 범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이 있더라도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간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경비원의 범죄경력 조회, 그리고 경비업무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개정이유 [법률 제12911호, 2014.12.30. 일부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경비업 법인에서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성범죄 결격자 배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는 한편,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기간 중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하여도 이에 대한 취소규정이 없어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격정지 기간 중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경비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였다.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기간 중 선임되어 활동했을 경우에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이유 [법률 제13397호, 2015.7.20. 일부개정]

경비협회의 입찰보증 등의 공제사업을 통해 중소 경비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보증보험업체 또는 금융기관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제사업 운영주체의 전문성 부족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의 통제장치를 마련함. 또한 경찰의 감독 업무 강화 및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가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경비업무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될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도록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가 경비업자의 경비원을 채용할 때 무자격자·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경비협회의 공제사업 범위를 확대해 입찰보증·계약보증·하도급보증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면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도록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개정이유 [법률 제13814호, 2016.1.26. 일부개정]

현행법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원 신입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경비원을 신입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비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개인으로 일반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수경비원은 업무의 특성상 제외되었다.

개정이유 [법률 제14909호, 2017.10.24. 일부개정]

국민의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는 경비업자의 경우 매년 폐업 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비 도급실적의 산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률마다 행정형벌의 편차가 큰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킨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경비지도사시험은 시행 이래로 매년 1회씩 시험을 봤고, 일 년에 600명 기준 동점자까지 합격하였다. 하지만 국가자격으로 경비지도사 시험의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매년 1회 이상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년 이내 도급실적을 기준으로 폐업을 하던 이전 규정을 변경하여 2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을 다른 행정형벌과의 편차를 고려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IV. 「경비업법」 제·개정에 따른 시대적 구분

「경비업법」은 1976년 민간경비제도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지고 건전한 경비업의 육성을 위해 개정되었다. 거시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경비업의 범위는 계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시설경비(국가중요시설 포함)와 호송경비에서 신변보호업무, 신고에서 허가로 바뀌면서 2001년에 기계경비와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면서 업무영역을 계속적으로 확장하였다. 규제, 행정처분은 삭제와 완화보다 추가와 강화가 더 많아 보였다. 대표적인 것이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것이다. 물론 삭제와 완화도 있었다. 사회환경의 변화와 고령화로 인해 일반경비원의 연령 상한이 상향되다가 삭제되고 특수경비원의 연령상한도 58세에서 60세로 상향되었다. 하지만 가장 변화가 없는 것은 업무영역과 권한에 대한 내용은 변화가 거의 없었다. 물론 업무영역이 직무별로 5가지가 있지만, 업무 간 영역이 경우 겹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집단민원현장까지 추가되어 신고, 허가, 의무는 추가되었지만, 경비원이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업법」의 개정은 크게 3가지 시기로 나뉘볼 수 있다. 첫 번째 1976년~2001년까지 지금의 5가지 업무영역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두 번째 2002년~2013년까지 제

도적인 기반 위에 양적인 발전을 이루는 시기이다. 세 번째 2013년 집단민원현장의 시작과 범죄경력 조회 등 양적인 증가가 둔해지고 질적인 발전을 이루는 시기이다.

1. 1976~2001(정착기)

「경비업법」이 제정되고 시설경비와 호송경비를 시작으로 성장으로 이루는 시기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들이 나타나면서 제도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경비(국가중요시설 포함)와 호송경비만 있었던 업무가 1996년 신변보호업이 추가되고 2001년 기계경비업무가 신고에서 허가로 또한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어 5가지 업무구분이 완성되었다.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5가지의 구분은 2001년 이후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1995년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경비지도사 자격증 제도가 생기면서 약 2만1961명의 경비지도사가 자격증을 취득²⁾하고 전국의 경찰청에 신고되어 5631명의 경비지도사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변화하고자 ‘용역’ 단어도 법령에서 빼면서 지금의 「경비업법」이 되었다. 일반경비원의 연령 상한과 경비협회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공제사업, 경비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도 신설되면서 직업으로써 경비원이 정착되었다. 결과적으로 5가지 업무와 경비지도사, 경비협회, 법령 등 지금의 민간경비가 있을 수 있는 「경비업법」의 정착기라고 할 수 있다.

2. 2001~2013(성장기-양적)

이 시기에는 다른 시기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제도적인 완화가 이루어져, 민간경비산업의 발달을 가속화 시켰다. 대표적으로 2011년에 특수경비를 제외한 다른 4가지 경비업에 대해 자본금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하향하여 경비업에 대한 허가요건을 낮추었다. 경비업자들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던 것을 업무의 특성상 특수경비업무를 제외하고 겸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특수경비업을 제외한 경비업을 하는 영업주들의 영업 범위를 넓혀주었다. 또한 양벌규정에서 법의 해석으로 영업주의 노력·감독과는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했지만, 우리나라 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영업주의 관리·감독·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변화

2)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국 전문자격운영팀에서 발표한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통계(총괄) 참고

는 사회적으로 고령자 취업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각종 문화·체육·예술 행사들이 늘어나면서 더욱 민간경비업의 양적 증가를 가져왔다. 경찰청 정보공개 청구자료에 따르면 2001년에 경비업체가 1,882개 경비원이 81,618명에서 2013년까지 양적 발전기 기간 동안 경비업체가 4,077개로 116.6% 증가했고, 경비원이 151,739명으로 85.9%나 증가해 매년 10%에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었다.

3. 2013~현재(성장기-질적)

민간경비산업의 양적발전의 정체하고 질적인 발전한 시기이다. 양적 성장기에 보여준 매년 10%에 가까운 성장은 둔화되어 경찰청 정보공개 청구자료에 2013년 경비업체가 4,077개, 경비원이 151,739명이 2017년 말 기준으로 경비업체가 4,610개로 13.0%, 경비원이 156,066명으로 2.8%로 매년 4% 남짓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7월 경기 안산시 SJM 공장에서 회사 측이 고용한 경비업체 컨택터스 소속 경비원 200여 명이 농성 중인 노조원 150여 명에게 폭력을 행사해 30여 명이 다친 사건이다(김남주, 2017). 컨택터스 사건은 경비업법이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를 통제하기 위한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주었고 2013년 개정을 통해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자본금에 대한 규정도 한시적으로 5천만 원으로 하향하였던 것을 1억으로 상향³⁾ 하여 경비업 허가의 기준을 높였다. 이 외에 각종 처벌규정이 생기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다. 범죄경력자 조회와 성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경비원들의 전문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경비원 신입교육 시간을 28시간에서 24시간으로 현실화하였다, 경비원 개인교육⁴⁾ 등이 추가되면서 기존에 28시간 동안 경비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신청한 대부분이 경비원들이 근무와 교육을 병행해 교육이 집중할 수 없었지만,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개인교육이 가능해짐으로써 교육의 질과 참여도가 향상되었다. 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3) 4) 특수경비의 자본금은 5억원으로 유지, 특수경비의 신입교육은 현재까지도 경비업자의 부담으로만 이루어진다.

V. 결론

「경비업법」의 제·개정을 바탕으로 민간경비의 시대적으로 구분해본 결과 1976년 「경비업법」의 제정부터 지금의 5가지 업무가 구성되는 2001년을 정착기, 5가지 업무를 중심으로 사회환경의 변화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성장기-양적’, 양적인 성장은 둔해졌지만 집단민원현장의 규정, 각종 규제 강화와 경비원의 교육질 향상으로 ‘성장기-질적’으로 구분하였다.

전체적인 개정의 흐름은 삭제와 완화보다 추가와 삭제가 많았다. 우리나라의 치안을 담당하는 중요한 주체 중에 하나지만 경비업과 경비원의 업무영역 확대와 적정한 권한의 위임없이 양적인 증가를 해왔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26번의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크게 1976년 제정부터 지금의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가 구성된 2001년까지, 그리고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다양한 자본금은 하향,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 적용, 일반경비업자의 경업금지 조항 삭제 등으로 인해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2013년부터는 집단민원현장 지정을 시작으로 성범죄 경력에 따른 종사 금지기간 증가,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 부적격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 규제를 강화하고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구분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들을 통해 얻은 사실과 논리에 근거해 나왔지만, 「경비업법」을 중심으로 시대적 구분을 함으로써 해석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연구자에 따라 가치관과 지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시작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학문을 더욱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어 사회안전을 책임지는 핵심주체로서 민간경비 학문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와 더불어 경호, 보안 등에 대한 시대적 구분을 확장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본 시대적 구분, 그리고 시대적 구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민원, 함주일 (2010). 민간경비 산업의 범죄성장요인에 따른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5, 1-26.
- 김남주 (2017). 민간경비업무에서 집단민원현장의 대응실태 및 개선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민 (2012). 일반경비지도사와 일본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한국치안행정논집, 9(3), 111-134.
- 박병식 (2011). 경비업법의 현안과 해결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9, 89-113.
- 박수현, 김태민(2013). 호주와 한국의 경비원 교육훈련제도 비교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2(3), 22-47.
- 서직석, 박세창 (2018). ‘경비업법’상 제3차의 지위와 책임. 한국경찰학회보, 68, 95-114.
- 신형석, 이기세 (2013). 개정 경비업법의 규제수단강화와 그 정책적 함의. 아주법학, 7(3), 103-129.
- 이민형 (2014). 항만보안 인력운용시스템 개선방안-민간경비를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보, 4(2), 87-104.
- 이민형, 이상철, 최용 (2009). 한 중 민간경비관련법제 비교 고찰 : 한국 경비업법과 중국 보안서비스관리조례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23, 35-67.
- 이세환 (2012). 민간경비 발전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에 관한 연구: 일본 경비업법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3), 167-194.
- 조민상, 조호대 (2017).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민간경비 업무 영역 확대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6, 191-214.
- 최석오 (2011). 경비업법 입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석오 (2012). 경비업법상 직무범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48, 99-117.
- 최선우 (2009). 민간경비론. 인천: 진영사.
- 「경비업법」, 시행 2018.4.25.(법률 제14909호)
- 「경비업법」, 시행 2017.7.26.(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 「경비업법」, 시행 2016.1.26.(법률 제13814호, 2016.1.26. 일부개정)
- 「경비업법」, 시행 2016.1.6.(법률 제13719호, 2016.1.6. 타법개정)

- 「경비업법」, 시행 2016.1.6.(법률 제13718호, 2016.1.6. 타법개정)
- 「경비업법」, 시행 2015.10.21.(법률 제13397호, 2015.7.20. 일부개정)
- 「경비업법」, 시행 2014.12.30.(법률 제12911호, 2014.12.30 일부개정)
- 「경비업법」, 시행 2014.11.19.(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 「경비업법」, 시행 2014.6.8.(법률 제11872호, 2013.6.7. 일부개정)
- 「경비업법」, 시행 2013.3.23.(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 「경비업법」, 시행 2009.4.1.(법률 제9569호, 2009.4.1. 일부개정)
- 「경비업법」, 시행 2008.12.26.(법률 제9192호, 2008.12.26. 일부개정)
- 「경비업법」, 시행 2008.2.29.(법률 제8872호, 2008.2.29. 타법개정)
- 「경비업법」, 시행 2008.2.29.(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 「경비업법」, 시행 2006.2.5.(법률 제7671호, 2005.8.4. 일부개정)
- 「경비업법」, 시행 2005.5.31.(법률 제7554호, 2005.5.31. 일부개정)
- 「경비업법」, 시행 2003.12.19.(법률 제6787호, 2002.12.18. 일부개정)
- 「경비업법」, 시행 2001.7.8.(법률 제6467호, 2001.4.7. 전부개정)
- 「경비업법」, 시행 1999.10.1.(법률 제5940호, 1999.3.31. 일부개정)
- 「경비업법」, 시행 1998.1.1.(법률 제5453호, 1997.12.13. 일부개정)
- 「경비업법」, 시행 1996.7.1.(법률 제5124호, 1995.12.30. 일부개정)
- 「경비업법」, 시행 1991.7.31.(법률 제4369호, 1991.5.31. 타법개정)
- 「경비업법」, 시행 1990.1.28.(법률 제4148호, 1989.12.27. 일부개정)
- 「경비업법」, 시행 1984.1.31.(법률 제3678호, 1983.12.30. 일부개정)
- 「경비업법」, 시행 1981.2.14.(법률 제3372호, 1981.2.14. 일부개정)
- 「경비업법」, 시행 1977.4.1.(법률 제2946호, 1976.12.31. 일부개정)
-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17.7.26.(법률 제28215호)
-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7.4.26.(행정안전부령 제3호)

【Abstract】

A Study on Period Division According to Overall Revision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Park, Su Hyeon·Kim, Byung Tae·Choi Dong Ja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made in 1976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good operation of services industry by establishing the requirements for promotion, development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services industry has been since 26 times of overall revisions. Period division of private security through overall revision of「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can be roughly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first is a settlement period. It is a period when the present five business areas were completed from 1976 to 2001. Beginning with facility and escort security in 1996, five types of jobs have been prepared. so far by adding personal protection in 1996, and machine and special security in 2001. The second is a quantitative growth period. It is a period when quantitative development is made on the institutional basis. As various culture, sports and arts events are increasing based on the demand of security services due to an increase in the people's sense of security, quantitative development was made, which additionally influenced the downward trend of capital and the possibility of having two jobs through revisions. The third is a qualitative growth period. From 2013 to the present is a period when quantitative growth has slowed and qualitative growth has been made. After the period of quantitative growth, the growth slowed down. However, by raising the criteria for permission of services industry through creation of a rule for the group civil petition, by raising capital, by institutionally compensating for diverse punishment regulations, by realizing the training hours for new security guards, by permitting private education, etc, the reliability and professionalism of a security guard job has been to be recovered.

Keywords: Security services industry, Security industry services act, Overall revision, Private security, Period division